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8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윤종오·허성무·전종덕

정혜경 • 차규근 • 김재원

복기왕 · 김종민 · 민형배

정춘생 · 김준혁 · 강득구

용혜인 · 임미애 · 한창민

신장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 도급대금을 청구·수령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(SPC)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.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출자·설립한 법인

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9항·제10항, 제35조제1항·제2항, 제68조의3제6항).

법률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9항 전단 중 "시스템을"을 "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·운영하는 시스템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・설립한 법 인(이하 "특수목적법인"이라 한다)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・지급하는 경우에도 제9 항과 같다.

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공공기관이"를 "공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"또는"을 ","으로, "공공기관이"를 "공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이"로 한다.

제68조의3제6항 중 "또는"을 ","으로, "공공기관인"을 "공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9항·제10항, 제35조제1항·제2항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(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 ①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 ① ~ ⑧ (생 략)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(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)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「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[선급금, 기성금, 준공금 및 선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급금(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・운영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하는 시스템을-----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· 장비대금, 하도급대금 등 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)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,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, 건설근로자, 건설기계대여업자, 가설기자재

대여업자,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·지급의 방법,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35조(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) 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 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

⑩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
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
<u>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·</u>
설립한 법인(이하 "특수목적법
인"이라 한다)이 발주하는 건
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
그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
구・지급하는 경우에도 제9항
과 같다.
제35조(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)
①
,

로 본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가.•나. (생 략)

- 2. (생략)
-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

<u>,</u>
1
<u>공공기관</u>
<u> </u>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(현행과 같음) ②
2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공공기관 또는</u>
특수목적법인이

- ③ ~ ⑦ (생 략) 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) ① ~ ⑤ (생 략)
 - ⑥ 발주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
급보증) ① ~ ⑤ (현행과 같
음)
6
공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인